

# KERI Brief

##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검토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dwlim@keri.org)

**연**결납세제도는 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현행 우리나라 연결납세제도는 적용범위를 완전지배법인 간으로 한정하여 제도가 활발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는 기업의 조직구성에 대한 과세상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보완될 필요가 있고, 100%의 완전지배로 한정하여 연결납세를 허용하는 현행 제도는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제도의 활용도 및 실효성이 크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연결납세제도가 지주회사의 활성화 및 지주회사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연구결과에 따른다면 지주회사의 적극적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주회사의 활성화와 기업형태에 따른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위해서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이 80%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첫 번째, 경제

적 실체 개념에 따른다면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2017년 기준 지주회사의 지주비율 평균이 78.8%인 점을 고려할 때 8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두 번째, 기업구조조정세제 및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와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완전지배가 아닌 80%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 2009년 말 법인세법 개정 시 합병·분할 관련하여 적격요건의 지분율을 95%에서 80%로 완화했고, 이는 복수의 실체가 하나의 경제적 동일체가 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물상 20%의 변동은 용인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연결납세의 적용범위도 완전지배로 한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 기업과세상 국제조세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한 측면에서도 미국처럼 기준지분율을 80%로 확대하고 채무증권과 유사한 경제적 실질을 지닌 주식 등을 예외로 설정하는 등 합리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 I. 검토 배경

□ 1999년 지주회사제도의 설립 및 전환이 허용되면서 그 활성화를 위하여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공청회를 거쳐 2008년 말 제도화되었음

○ 1998년 우리나라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OECD, IBRD 등으로부터 지주회사 허용이 권고되었고, 1999년 4월부터 지주회사가 허용된 후 지주회사 체제가 장려되었음

- 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분사화 형태가 사업부제 형태에 비해 세제상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동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조세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결납세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됨

○ 2008년 말 도입된 연결납세제도는 기업의 경영조직 선택(사업부제와 분사화 간)에 대한 조세중립성을 제고하고 세제를 선진화하는 등 지주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음

- 기업의 조직선택에 있어서 조세중립성을 보장하여 기업이 경영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였고, 소득통산형(연결납세형)\*을 채택하여 경제적 동일체인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함

\* '연결납세형'은 연결법인들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하나의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며, 연결법인 간 내부거래를 과세상 거래로 인식하지 않음. '손익대체형'은 연결법인 각각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손익만 세액계산 시 서로 대체할 수 있음

-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도록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여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에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등 기업세제의 선진화를 추구했음

\*\* 연결납세제도는 미국에서 1917년 도입된 이래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 OECD 대부분의 국가(22개국)가 시행하고 있음

□ 현행 우리나라 연결납세제도는 적용범위를 완전히 배법인 간으로 한정하여 제도가 활발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음

○ '완전지배'는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이 100%인 것을 말함

-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각국의 예를 보면 적용기준이 되는 지분관계가 50~100%의 범위에 분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적용범위가 너무 제한되어 있음

○ 2017년 기준 지주회사 관련 법인 1,971개(193개 지주회사) 중 463개 법인(23.5%)만이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그 활용도가 낮은 상황임

□ 연결납세제도는 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적용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이 확대된다면 조세부담의 감소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음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의 지분취득한도 상향<sup>1)</sup> 등 규제를 강화하려 하는데, 이에 세제 측면에서 연결납세제도 적용범위를 확대(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하여야 지주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제도의 적용범위를 경제적 실제, 다른 제도와와의 정합성, 외국제도와와의 비교 측면에서 검토하고 적용범위의 확대를 제안하려 함

1) 정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주회사도 해당)에 한정하여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상장 20퍼센트, 비상장 40퍼센트)보다 상향(상장 30퍼센트, 비상장 50퍼센트)하기로 함(의안번호 2016942, 2018.11.30.)

## II. 연결납세제도 개요

- ▣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고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을 이연하여 법인세를 과세함
-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기 전 우리나라의 지주회사 관련 세제는 설립 시 세제상 지원<sup>2)</sup>과 운영상에 있어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제도<sup>3)</sup>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었음
  -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경제적 관점에서 하나의 기업이 되었음에도 불가하고,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내부거래이익의 제거와 손익통산이 불가능했음
- 기업조직 선택에 있어 조세중립성 제고<sup>4)</sup>를 통해 지주회사, 분사 등 기업구조조정 및 경영효율화 지원 등 세제 선진화를 위해 2008년 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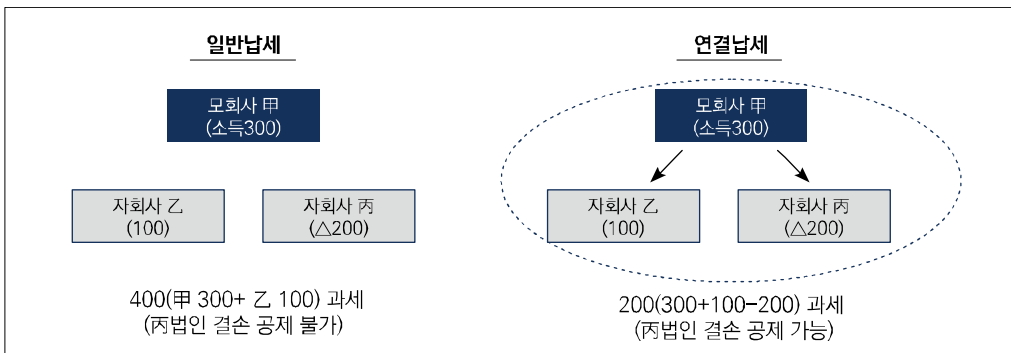
- 2010년부터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여 모회사와 자회사(100% 소유)를 1개 과세대상으로 보아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을 합산하여 과세 선택을 허용하고 있음

### 1. 이론 및 우리나라 제도

- ▣ 연결납세제도의 유형은 소득통산형과 손익대체형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소득통산형을 따르고 있음<sup>5)</sup>

- 2)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로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 추후 그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음
- 3)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지분율에 따라 80~100% 익금에서 제외함(법인세법 제18조의3)
- 4) 내부 사업부문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자회사로 운영하는 경우 간 조세중립성 제고
- 5) 신찬수, "연결납세제도의 법제화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p.36

〈그림 1〉 일반납세제도와 연결납세제도의 차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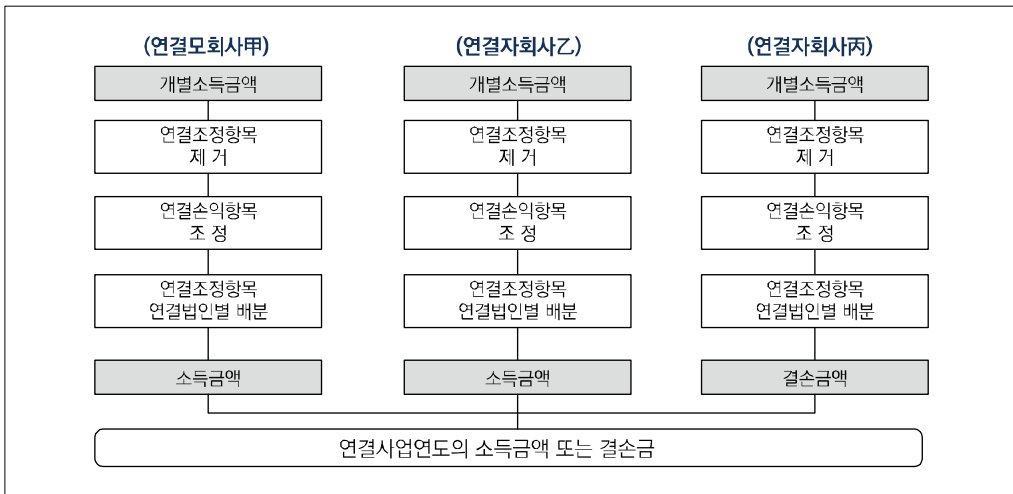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통산형'이란 연결납세제도에 참가하는 자회사의 소득을 모회사의 소득에 합산하여 모회사가 전체 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을 자회사에 배분하는 방식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통산형은 기업집단의 경제적 일체성을 중시하는 세제로서 결손금대체·내부미실현손익 이연 등을 포함하고 있어 손익대체형보다 이론적으로 정비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그 제도가 복잡하여 입법과 세정운영에 많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단점이 있음</li> <li>- 소득통산형은 다시 대리인형과 통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리인형은 자회사의 소득을 모회사의 소득에 합산하되, 모회사가 납세대리인이 되고, 각 개별회사는 배분된 연결세액에 관한 고유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유형을 말하고 통합형은 모회사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내부적으로 연결세액을 배분하는 제도임</li> </ul> </li> <li>○ '손익대체형'이란 기업집단에 속하는 개별회사의 내부거래 손익을 상계하지 아니한 채 손익을 다른 개별회사에 대체시켜 각 개별회사의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명료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결손금 대체의 임의선택을 이용한 조세회피가 용이하므로 이를 방지하는 규정이 상세하게 규정되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단점이 있음</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단위 조작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이 취소된 법인, 연결납세제도 적용포기 법인, 지분비율 하락 자회사는 5년간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li> <li>○ 우리나라의 연결납세제도에서는 자회사의 지분비율을 100%, 즉 완전지배로 하고 있고,<sup>10)</sup> 연결모회사의 연결자회사에 대한 소유는 직접소유뿐만 아니라 간접소유,<sup>11)</sup> 합동소유<sup>12)</sup>도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결자회사의 지분비율을 100%로 하는 것은 연결납세이론에 충실하고, 도입초기에 예측하지 못한 조세회피에 대비하고 소수주주문제를 피하기 위해서인데,<sup>13)</sup> 이에 따라 의견결 유무와 관계없이 자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을 기준으로 지분비율을 판정하고 있음</li> </ul> </li> <li>○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은 선택적이지만, 연결집단이 연결납세제도를 선택하는 경우에 연결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자회사는 강제적으로 적용하고 있음<sup>14)</sup></li> </ul>  |
| <p><b>□ 우리나라 연결납세제도는 완전 지배회사 간의 연결 집단<sup>6)</sup>만 적용하고 있고, 소득통산형<sup>7)</sup> 중 모회사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통합형<sup>8)</sup>을 따르고 있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결납세를 적용할 수 있는 법인은 내국법인(비영리법인, 청산 중인 법인 등은 제외)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 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제외)임<sup>9)</sup></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 '연결집단'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함</li> <li>7)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3(연결납세제도)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말함(법인세법 제2조 제6호)</li> <li>8) 법인세법 제76조의17 제1항에 따르면 연결모회사는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법인세법 제76조의19에 따르면 연결모회사는 연결법인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연결자회사는 연결법인세액 중 법인세법에서 정한 분담액을 연결모회사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li> <li>9) 법인세법 제76조의8 제1항</li> <li>10) 법인세법 제2조 제9호, 제76조의8 제5항</li> <li>11) A가 B의 100%를 소유하고, B가 C의 100%를 소유하는 방식</li> <li>12) A가 B의 100%를 소유하고, B가 C의 70%를 소유하며 A가 C의 30%를 소유하는 방식</li> <li>13) 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 공청회, "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 한국공인회계사회, 2008. 7. 15, p.9</li> <li>14) 법인세법 제76조의8 제1항</li> </ul> |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검토

|   |   |
|---|---|
| <p>○ 연결집단의 세액계산 과정은 연결소득금액의 계산, 연결과세표준의 계산 및 연결법인별 납부세액의 계산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음</p> <p>- 연결집단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결손금)은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연결세무조정 완료 후 '각 연결법인별 연결대상소득금액(결손금)'을 합산해서 계산함<sup>15)</sup></p> <p>* 연결조정항목(group items)의 제거는 익금불산입한 수입배당금액과 손금불산입한 기부금 및 접대비의 세무조정을 제거하는 것임<sup>16)</sup></p> <p>* 연결손익항목의 조정은 내부거래(연결법인간 거래)로 인한 익금(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과 손금(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및 다른 연결법인의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제거하고, 일시적 성격의 익금(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소득 및 양도손실 실현분)과 손금(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손실 및 양도소득 실현분)도 제거하는 것임<sup>17)</sup></p> | <p>*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고 전체 익금불산입액 및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한 후 연결법인별로 배분하는 것임</p>   |
|   | <p>15) 법인세법 제76조의14 제1항</p> <p>16)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a single corporation)으로 보아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과 기부금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기 위한 것임</p> <p>17) 다만, 연결법인 간이라 할지라도 자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동 거래에 대해서는 내부거래손익의 이연 없이 전액을 즉시 과세함(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 제2항)</p> |

〈그림 2〉 연결소득금액 합산흐름도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연결소득금액에서 연결이월결손금, 각 연결법인의 비과세 소득 및 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는데 연결집단 단위에서 합산함
- 납부세액 계산은 다시 연결법인별로 하기 때문에 감면세액과 가산세는 개별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납부만 연결모회사가 하게 됨

□ 연결납세 적용 시 연결법인 간 결손금 배분<sup>18)</sup>① 및 거래손익 제거<sup>19)</sup>②~④ 등에 따라 통상 세수감소가 발생함

〈사 례〉

- ① 자회사는 결손 △30, 모회사는 소득 100 발생
- ② 자회사와 모회사 간 접대비 지출, ③ 배당금 지급,
- ④ 부동산거래로 양도차익 있음

2. 주요국의 연결납세제도와 비교

□ 연결납세제도는 OECD 국가 중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22개국 시행 중이며, 국가별로 그 내용이 상이하지만 소득통산형과 손익대체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기업집단체제의 적용대상인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은 소득통산형 국가인 미국의 경우 80% 이상, 일본과 호주는 100%로 하고 있음
- 손익통산형 국가인 영국의 경우 75% 이상, 독일은 50% 이상으로 하고 있어 소득통산형이 손익대체형보다 높게 설정하고 있음

- 18) 세율 누진구조에 따라 흑자회사 간 연결 시 세수증이 되나, 효과는 크지 않음
- 19) 연결법인 간 차입자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차감되지 않는 등 세수감 발생

〈표 1〉 연결납세제도 적용 시 법인세 계산방식

|              |   | 연결납세 적용 ×                             | 연결납세 적용*                              | 세수 영향  |
|--------------|---|---------------------------------------|---------------------------------------|--------|
| 소득합산         | ① | 과표 100<br>(각 법인에 누진세율 적용)             | 과표 70<br>(과세표준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 △<br>+ |
|              | ② | 상호접대비 손금산입                            | 상호접대비 손금불산입<br>(접대비 한도 축소)            | +      |
| 내부거래 손익효과 제거 | ③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br>(단, 차입금 있는 경우 일부 익금산입)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br>(연결법인 간 차입금은 차입금에서 제외) | △      |
|              | ④ | 양도차익 과세                               | 양도차익 과세하지 않음<br>(과세이연)                | △      |

\* 기타 모자회사 간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부인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는 소득통산형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소득 통산형을 채택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미국, 일본)의 제도를 중심으로 비교해서 우리나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검토함<sup>20)</sup></li> <li>□ 미국, 일본 및 우리나라의 연결납세제도에서 적용대상(범위)에 관한 규정 중 유사한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li> <li>○ 첫 번째, 연결납세방식은 그 적용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고 연결집단의 선택에 따라 적용됨<sup>21)</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결납세를 선택하면 그 이후에는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고,<sup>22)</sup> 연결납세에서 제외(포기)된 이후 다시 연결집단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4년 또는 5년)이 경과되어야 함<sup>23)</sup></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 번째, 연결집단의 구성원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배기준은 미국의 경우 의결권의 80% 이상과 주식가치의 80%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으로 하고 주식의 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비하여,<sup>29)</sup> 일본 및 우리나라는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의 전부로 함<sup>30)</sup></li> <li>○ 두 번째, 자기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할 것인지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이를 제외하도록 명문규정을 두고 있으나,<sup>31)</sup> 미국 및 우리나라에서는 명문규정이 없어서 발행주식에 자기주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됨</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 번째, 제도 선택 후 연결집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은 연결집단과 연결납세에 모두 포함하여야 함<sup>24)</sup></li> <li>○ 세 번째, 연결집단은 연결모회사와 하나 이상의 연결자회사로 구성되며, 다른 회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는 연결모회사가 될 수 없음<sup>25)</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소유형태는 직접소유뿐 아니라 간접소유 및 합동소유에 의하여 지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함<sup>26)</sup></li> </ul> </li> <li>○ 네 번째, 외국법인, 비영리법인 및 각국의 세법상 특별한 과세방법에 따라 과세되는 법인은 연결집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음<sup>27)</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기업형태는 법인으로 한정됨<sup>28)</sup></li> </ul> </li> <li>□ 미국, 일본 및 우리나라의 연결납세제도에서 적용 대상에 관한 규정 중 차이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 미국은 1917년에 연결납세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였고 90여 년에 걸친 수정보완을 통하여 정교하고 복잡한 제도를 가지고 있음. 우리나라와 법률체계가 유사한 일본은 최근인 2002년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도입단계의 경험이 우리나라 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임</li> <li>21) 미국 내국세입법 §1501, 일본 법인세법 제4조의3, 법인세법 제76조의8 제1항</li> <li>22) Treasury Regulation §1.1502-75(a)(2), 일본 법인세법 제4조의5 제5항, 법인세법 제76조의10 제1항</li> <li>23) 미국 내국세입법 §1504(a)(3)(A), 일본 법인세법 제14조의6 제3항 제3호, 법인세법 제76조의10 제1항</li> <li>24) Treasury Regulation §1.1502-75(e), 일본 법인세법 제4조의3 제2항, 법인세법 제76조의8 제1항</li> <li>25) 미국 내국세입법 §1504(a), 일본 법인세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의7 제2항과 제3항 및 동법 제4조의2, 법인세법 제76조의8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0조의12 제1항 제4호</li> <li>26) 미국 내국세입법 §1504(a)(1)(b)(i), 일본 법인세법 제4조의2, 법인세법 제76조의8 제4항</li> <li>27) 미국 내국세입법 §1504(b), 일본 법인세법 제4조의2, 법인세법 제76조의8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0조의12</li> <li>28) 호주에서는 특정 신탁과 파트너십도 완전지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결법인이 될 수 있음(ITAA §703-15)</li> <li>29) 미국 내국세입법 §1504(a)</li> <li>30) 일본 법인세법 제4조의2, 법인세법 제76조의8</li> <li>31) 일본 법인세법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6</li> </ul>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 번째, 미국은 경제적 실질이 채무증권과 유사한 우선주에 대하여 이를 총 주식에 포함하지 않고 지배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하여<sup>32)</sup> 일본 및 우리나라는 이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음</li> <li>○ 네 번째, 미국에서는 근로자가 취득·보유하는 특정 주식을 총 주식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나, 일본 및 우리나라는 5% 범위 내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로 조직된 단체가 취득 또는 보유하는 주식을 총 주식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sup>33)</sup></li> <li>- 일본(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경우 해당 근로자나 근로자단체가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해당 근로자 등이 해당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총 주식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섯째, 미국에서는 청산 중의 법인도 연결납세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데 비하여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연결법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sup>34)</sup></li> <li>- 일본과 우리나라는 각 사업연도소득과 청산소득을 구분계산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li> </ul>  |
|  | <p>32) 미국 내국세입법 §1504(a)(4),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우선주식의 경우 채무증권과 유사한 주식으로 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의결권이 없을 것</li> <li>② 배당에 있어서 제한적이며 우선적이고 비참가적이며 비누적적일 것</li> <li>③ 주식상환 또는 법인청산 시 주주에게 교부되는 가액이 발행 가액을 초과하지 않거나 그 할증액이 적정하다고 인정될 것</li> <li>④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없을 것</li> </ul> <p>33) 일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2호, 법인세법 제76조의8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0조의12 제3항</p> <p>34) 일본 법인세법 제4조의2, 법인세법 제76조의8 제1항</p> |

〈표 2〉 주요국의 연결납세제도 개요

| 항 목                              | 미 국                   | 일 본                   | 영 국                   | 독 일                    |
|----------------------------------|-----------------------|-----------------------|-----------------------|------------------------|
| 유형                               | 소득통산형                 | 소득통산형                 | 손익대체형<br>(그룹릴리프제도)    | 손익대체형<br>(기관제도)        |
| 연결대상범위                           | 80% 이상 소유<br>국내자회사    | 100% 소유<br>국내자회사      | 75%이상 소유<br>국내자회사     | 50%초과 소유<br>국내자회사      |
| 대상 자회사의 선택                       | 모든 자회사의<br>가입 강제      | 모든 자회사의<br>가입 강제      | 임의 선택                 | 임의 선택                  |
| 제도적용의 선택                         | 임의 선택                 | 임의 선택                 | 임의 선택                 | 임의 선택                  |
| 연결범위내 사업연도 동일                    | 필 요                   | 필 요                   | 불 요                   | 불 요                    |
| 내부거래<br>(미실현손익)의 취급              | 자산 매도자측<br>손익계상, 과세이연 | 자산 매도자측<br>손익계상, 과세이연 | 원가 양도,<br>손익은 매수자측 귀속 | 규정 없음                  |
| 연결 전 자회사의<br>(개별신고 연도의)<br>이월결손금 | 자회사의<br>소득에서<br>공제    | 소각                    | 이전대상 아님               | 이전대상 아님                |
| 납세 의무                            | 개별회사<br>(모회사: 신고 대리인) | 모회사<br>(자회사: 연대책임)    | 개별회사                  | 모회사<br>(모회사에게 모든 손익대체) |

자료: 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tion



### III.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

**□ 연결납세가 적용되는 연결자회사의 범위(적용범위)에 대한 문제는 과세요건 중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임**

- 기업조직형태에 따른 중립성 제고 및 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현행 연결납세제도는 적용범위가 '완전지배(100%)'로 한정되어 있어 그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고,<sup>35)</sup>
- 도입 시 조세회피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00% 지분율을 채택했지만, 제도 도입 취지와 세법상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한다면 현행 적용범위가 적정한지 의문임
  -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아 세 부담을 결정하여 조세의 조직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달성하는 것이 연결납세제도의 주 취지임<sup>36)</sup>
- 아래에서는 경제적 실체, 세법상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 국제조세경쟁 측면에서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범위에 대해 검토하려 함

#### 1. 경제적 실체 개념

**□ 연결납세제도는 기업그룹의 경영 일체성에 중점을 두고 경제적으로 하나의 실체로 보아 소득과 결손을 통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제도임**

- 현행 세법에서는 경제적 실체의 개념에 대해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았고, 사법상 내지 경제상의 사상을 규율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세법의 특성상<sup>37)</sup> 회사법 및 기업회계에서의 개념을 차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 연결납세제도와 기업집단을 경제적 실체의 관점에서 단일실체로 본다는 점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연결회계(연결재무제표)에서의 경제적 실체의 개념을 검토해보는 것은 좋은 방법일 수 있음

- 연결재무제표에 있어서의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sup>38)</sup>에 따르면 지배기업이 직접으로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 지배기업이 그 기업을 지배한다고 보고,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sup>39)</sup>에도 종속기업을 지배한다고 보고 있음<sup>40)41)</sup>
- 이와 같이 50%를 초과하여 소유한다면, 연결납세제도에서도 연결모회사가 연결자회사의 영업·재무 등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하나의 실체로 보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임

- 35) 전체 지주회사 관련 법인 중 23.5%만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 36) 법인세법 제정·개정이유(법률 제9267호, 2008.12.26. 일부개정)
- 37)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2006, p.93
- 38) 법 제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종속의 관계”란 회사가 경제 활동에서 효용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로서 그 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와 그 다른 회사(이하 “종속회사”라 한다)의 관계를 말함. 이 경우 지배·종속의 관계는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 또는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39)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문단 4.5 (실질적인 지배력)
  - (1) 다른 투자자와의 약정으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 (2) 법규나 약정에 따라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 (3)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그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 (4)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그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 4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0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 41) 일본의 경우에도 회사법 제2조 제3항에 연결재무제표에서 연결대상이 되는 자회사는 모회사가 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주식회사 또는 모회사가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라고 규정되어 있음

2. 세법상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

□ **주식교환·이전 및 회사분할 관련 기업구조조정세제와 연결납세제도를 통틀어 기업집단세제로 보는 입장<sup>42)</sup>과 지주회사의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해 배당세액공제를 규정<sup>43)</sup>하고 있는 법인세법을 볼 때 연결납세제도와 기업구조조정세제 및 배당세액공제는 정합성을 지닐 필요가 있음**

○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범위와 기업구조조정세제의 세제상 우대적요건 및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지분율을 비교하여 상호 간의 정합성을 가졌는지 검토하러 함

□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법 등에 있어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구조조정세제 중 기업집단을 형성하거나 지주회사를 만드는 제도에서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마련하고 있는<sup>44)</sup> 적격요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물적분할] 법인세법은 회사의 분할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적격분할의 요건을 마련하고, 세제상 우대조치를 마련하고 있음

- 여기서 기본적인 적격분할의 요건은 ① 사업목적,<sup>45)</sup> ② 지분의 계속성,<sup>46)</sup> ③ 사업의 계속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sup>47)</sup>

○ [현물출자] 물적분할을 하지 않고 현물출자에 의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사실상의 분할도 가능한데,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자회사를 세우는 경우에 지분 80% 이상 유지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과세를 이연하고 있음

- 물적분할과는 달리, 현물출자에 의해서는 자회사를 80% 이상 소유하면 가능함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포괄적 이전] 지분 80% 이상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의 경우에는 이로 인해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주의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과세를 처분 시 까지 이연하도록 하고 있음<sup>48)</sup>

○ 현행 법인세법 등은 기업구조조정을 통해서 자회사의 지분을 80% 보유하면서<sup>49)</sup>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기업의 실체가 변화가 없다고 보고 과세이연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연결납세의 적용범위를 100%로 하고 있는 것과 정합성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음

42) 中田信正, "일본에 있어서의 기업집단세제개혁의 동향-기업조직재편세제와 연결납세제도", 「경제경영」 제35권제1호,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원, 2002, p.282

43) 법인세법 제18조의3

44) 이 세제상의 우대조치의 본질은 기업의 실체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형식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임(이창희, 「세법강의(제6판)」, 박영사, 2007, p.606)

45)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46)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 받은 주식을 분할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47) 법인세법 제47조, 제46조 제1항

48)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적격요건은 다음과 같음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일 것.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는 제외한다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완전자회사가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49) 다만, 물적분할의 경우 예외임

|   |  |
|---|--|
| <p>- 미국의 경우에는 과세이연요건의 지분율이 80%, 연결대상법위의 지분율이 80%로 일치하고 있음</p> <p>□ 세법은 법인이라는 실체를 통해서 수령하는 주주의 소득에 대하여 일단 법인단계에서 과세하고 다시 주주단계에서 과세하는 이중과세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하여 배당세액공제(imputation)를 규정하고 있음</p> <p>○ 투자회사가 지주회사인지의 여부, 피투자회사가 상장법인인지의 여부, 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따라 피투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금액을 달리 적용하고 있음<sup>50)</sup></p> <p>○ 지주회사의 경우 (상장법인) 자회사의 지분을 40% 초과 보유하는 경우에는 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에 대해서 전액 익금불산입하고 있으며, 이는 연결납세의 적용범위를 100%로 하고 있는 것과 정합성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음</p> | <p>- 지주회사가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도 80% 초과 보유한다면 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은 전액 익금불산입하고 있어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범위가 100%인 것과 맞지 않음</p> |
| <p>50)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8조의3</p>  |  |

〈표 3〉 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 일반법인  |                   |        | 지주회사  |                  |        |
|-------|-------------------|--------|-------|------------------|--------|
| 피투자회사 | 출자비율              | 익금불산입률 | 자회사   | 출자비율             | 익금불산입률 |
| 상장법인  | 100%              | 100%   | 상장법인  | 40% 초과           | 100%   |
|       | 30% 초과<br>100% 미만 | 50%    |       | 30% 초과<br>40% 이하 | 90%    |
|       | 30% 이하            | 30%    |       | 30% 이하           | 80%    |
| 비상장법인 | 100%              | 100%   | 비상장법인 | 80% 초과           | 100%   |
|       | 50% 초과<br>100% 미만 | 50%    |       | 50% 초과<br>80% 이하 | 90%    |
|       | 30% 이하            | 30%    |       | 50% 이하           | 80%    |

자료: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정리

### 3. 국제적 비교에 따른 시사점

□ 우리나라의 경우 100% 모자회사 간에만 연결납세를 적용하도록 하여 주요국보다 적용대상을 좁게 운영 중임

- 미국의 경우 의결권 80% 이상과 주식가치의 80%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으로 하고, 주식의 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또한 미국은 순수하게 자금조달 목적인 경제적 실질이 채무증권이라면 연결납세의 적용기준 판단 시 제외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모두 포함하고 있음
  - 경제적 실질이 채무증권과 유사한 주식은 외부주주가 보유하더라도 모법인이 자법인을 사실상 완전히 배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주식의 발행은 자금조달방법으로서의 의미밖에는 없음
  - 의결권이 없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우선주는 채무증권에서의 이자와 유사한 정도의 최소한의 배당 우선권만이 있을 뿐 다른 어떤 유형의 우선권도 없다는 의미에서 “플레인 바닐라 우선주(plain vanilla preferred stock)”라고 함<sup>51)</sup>
- 우리나라 현행 연결납세제도는 완전지배의 개념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함으로써 순수한 자금조달 수단으로서의 주식발행이 연결납세의 적용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음
  - 즉, 경제적 실질이 채무증권과 유사한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연결납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주식의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을 포기하던지 아니면 연결납세를 포기하여야 하는 문 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임

-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범위는 도입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일본과 같이 100%로 했지만, 제도 시행 후 10년이 지나 어느 정도 정착된 현재 그 적용범위에 대해 미국의 경우처럼 합리적인 예외와 기준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

51) Barnett Phillips IV, “Is PIK Preferred Plain Vanilla?”, Tax Lawyer 45, 1991

#### IV. 결론

□ 연결납세제도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고, 기업의 조직구성에 대한 과세상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보완될 필요가 있음

- 특히, 100%의 완전지배로 한정하여 연결납세를 허용하는 현행 제도는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제도의 활용도 및 실효성이 크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 연결납세제도가 지주회사의 활성화 및 지주회사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연구결과<sup>52)</sup>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적극적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주회사의 활성화와 기업형태에 따른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위해서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이 80%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함

- 경제적 실체 개념에 따른다면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2017년 기준 지주회사의 지주비율<sup>53)</sup> 평균이 78.8%인 점을 고려할 때 8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함
  - 적용범위를 80%로 확대한다면 2017년 기준 지주회사 관련 법인 1,971개 중 1,130개(57.3%)가 연결납세제도를 선택·적용받을 수 있을 것임
- 기업구조조정세제 및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와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완전지배가 아닌 80% 수준까지 확대해야 함

- 2009년 말 법인세법 개정 시 합병·분할 관련하여 적격요건의 지분율을 95%에서 80%로 완화했고,<sup>54)</sup> 이는 복수의 실체가 하나의 경제적 동일체가 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물상 20%의 변동을 용인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연결납세의 적용범위도 완전지배로 한정할 필요는 없음

- 기업과세상 국제조세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측면에서도 미국처럼 기준지분율을 80%로 확대하고 채무증권과 유사한 경제적 실질을 지닌 주식<sup>55)</sup> 등을 예외로 설정하는 등 합리적인 보완이 필요함

-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국세청은 금융부채로 보아 이차지급액을 손금 산입하는 채무증권으로 취급하고,<sup>56)</sup> 상환우선주<sup>57)</sup>도 그 경제적 실질을 부채인 후순위채로 보고 있어<sup>58)</sup> 예외 설정이 필요

52) 이용규·오웅락·노희천·이석정, “연결납세제도 도입효과 및 증분석”, 「세무와 회계저널」 제13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2012.3

53) 회사의 총발행주식에 대한 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

54) 합병으로 구주를 처분하는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 중 가액기준으로 20%까지는 합병법인의 주식 이외의 것으로 대가를 수령하더라도 계속성의 요건은 지켜진 것으로 보아 과세를 이연함(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55) 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요건을 설정함  
 ① 의결권이 없을 것  
 ② 배당에 있어서 고정된 배당률에 의하여 우선적이고 비참가적이며 비누적적일 것  
 ③ 주식상환 또는 법인청산 시 주주에게 교부되는 가액이 발행가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④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없을 것

56) 국세청예규(법인세과-329, 2014. 07. 24.; 원천세과-782, 2011. 11. 30.)

57) 상환우선주는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 약정된 가액으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임

58) 국세청 예규(법인세과-522, 2012. 08. 28)

**[참고문헌]**

신찬수, “연결납세제도의 법제화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 공청회, “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 한국공인회계사회, 2008. 7.

이용규 · 오용락 · 노희천 · 이석정, “연결납세제도 도입효과 실증분석”, 「세무와 회계저널」 제13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2012.3.

이창희, 「세법강의」(제6판), 박영사, 2007.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2006.

中田信正, “일본에 있어서의 기업집단세제개혁의 동향-기업조직재편세제와 연결납세제도”, 「경제경영」 제35권 제1호,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원, 2002.

Barnet Phillips IV, Is PIK Preferred Plain Vanilla?, Tax Lawyer 45, 1991.



**keri**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일 2019년 12월 26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46층